

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제1호 중 “법 제6조의2 및 감독규정 제14조,”를 “법 제6조의 2, 시행령 제6조의4제2항, 감독규정 제14조 및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합병의 경우에는 금산법 제4조제3항에 서 정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, 동조제6항에 따라 “제3항 각”을 “시행령 제6조의4제2항 후단에서 “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금 산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주요출자자”를 “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(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“대주주”를 말한다)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제1항 및 제14조”를 “시행령 제6조의 4제2항 및 제14조”로, “제1항 및 제16조제1항”을 “시행령 제6조의4제1 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6조를 삭제한다.

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9조(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) 시행령 제7조의6제2호에서 “금 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”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

을 받아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

2. 신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

3. 법령 및 이 규정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
경우

제22조제1항 본문 중 “법 제10조의2제3항”을 “법 제10조의2제4항”으로
한다.

제42조제5항 단서 중 “법 제10조의2제3항”을 “법 제10조의2제4항”으로
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인가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<u>법 제6조의2 및 감독규정 제14조, 제15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</u>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④·⑤ (생략)</p> <p>제15조(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 기준) ① <u>합병의 경우에는 금산법 제4조제3항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, 동조제6항에 따라 “제3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금산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주요출자자가 [별표4]에 규정</u></p>	<p>제12조(인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법 제6조의2, 시행령 제6조의4제2항, 감독규정 제14조 및 -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 기준) ① <u>시행령 제6조의4제2항 후단에서 “각 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(법 제</u></p>

된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할 것

② 전환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전환시 주요출자자 요건은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 요건을 준용한다.

제16조(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

· 양도 · 양수 인가 심사기준)

① 해산 및 영업전부 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.

1.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고 예금자 등 이용자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
2. 「상법」 · 「자본시장과 금융

2조제11호에 따른 “대주주”를 말한다)-----

②-----

----- 시행령 제6조의4제2항 및 제14조-----

----- 시행령 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-----.

<삭 제>

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그 밖
에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
이 없을 것

②영업전부 양도의 경우에는 제
1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을
준용한다.

③영업전부 양수의 경우에는 제
14조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을
준용한다.

제19조(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미
한 사항) 법 제10조의2제1항제1
호 및 제2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
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
경우”라 함은 상호저축은행이
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(이하
“중앙회회장”이라 한다)이 표준
정관 및 표준업무방법서로 정하
는 바에 따라 각각 이를 변경하
는 경우와 상호저축은행이 법
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금
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
종류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
를 말한다.

제22조(보고 등) ① 상호저축은행
은 법 제10조의2제3항 각 호에

제19조(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미
한 사항) 시행령 제7조의6제2호
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
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”라
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11조제
1항제1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
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종류
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
2. 신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
수정
3. 법령 및 이 규정의 개정이나
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
경하는 경우

제22조(보고 등) ① -----
-- 법 제10조의2제4항 -----

